##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

제정 2012. 12. 11 훈령 제339호 일부개정 2014. 10. 8 훈령 제372호 일부개정 2017. 10. 2 규칙 제8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일부개정 2019. 12. 31 훈령 제463호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감사결과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·문책 등 불이익한 처분(요구)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,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 기준,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31]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4, 10, 8, 2019, 12, 31〉

- 1. "적극행정"이란 「용인시 감사 규칙」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및 임·직원(이하 "공무원 등"이라 한다)이 국가 또는 공 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면책"이란 「용인시 감사 규칙」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 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「용인시 감사 규칙」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·직원 등(이하 "공무원 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 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(이하 "처분"이라 한다)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.

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

- 3. "불이익한 처분 등"이란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,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및「용인시 감사규칙」상의 징계·문책 등의 처분을 말하다.
- 4. "경고 등 처분"이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·훈계 처분을 말한다.
- 5. 삭제〈2019. 12. 31〉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감 사(감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.

###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

제4조 삭제〈2014. 10. 8〉

제4조의2(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해석·적용상의 주의)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취지로 해석·적용하여야 하며, 심사를 느슨하게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. 〈개정 2019. 12. 31〉

[제목개정 2019. 12. 31]

[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, 12, 31]

- 제5조(적극행정 면책요건)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 - 1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 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  - 2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
  - 3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  -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의나

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- 1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한 경우
- 2.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등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6조,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·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31]

- 제6조(면책대상 제외)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. 〈개정 2014. 10. 8〉
  - 1.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
  - 2. 고의 · 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  - 3. 삭제〈2014. 10. 8〉
  - 4. 위법 · 부당한 민원 수용 등 업무처리를 한 경우
  - 5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·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
- 제7조(면책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용인시 면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구성한다. 〈개정 2014. 10. 8, 2017. 10. 2, 2019. 12. 31〉
  -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〈신설 2019. 12. 31〉

- 1. 회계·법무·인사·규제개선 관련 부서장
- 2.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
-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19. 12. 31〉
- 제8조(심의회 운영) ① 심의회는 시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개최한다. 다만, 소집회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서 면심의할 수 있다.
  -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,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 〈개 정 2014. 10. 8〉
  - ③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9조(면책제도 안내)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수감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0. 8, 2019. 12. 31〉
- 제10조(면책심사 신청)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수감 자를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 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수감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 장의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 10. 8, 2019. 12. 31〉
  -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등 수감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0. 8. 2019. 12. 31〉

- 제11조(면책심사 처리)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0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. 〈단서삭제 2019, 12, 31〉
- 제12조(심사결과의 처리)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,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
- ②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제13조 제4조의2로 이동〈2019. 12. 31〉

### 제3장 공무원 등의 경고 등 처분

- 제14조(경고 등 처분의 대상 및 종류)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 대 상은 기관 또는 공무원 등 이다.
  -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, 훈계는 기관장 외의 모든 공무원 등 에게,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적용하며,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제15조(경고 등 처분의 효력) ①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〈개정 2014. 10. 8〉
  - ② 시장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- 제16조(경고 등 처분의 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 10. 8〉
  - 1.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, 예 규,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
  - 2.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였을 때
  - 3.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때
  - 4. 공무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킨 때

- 5.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
- 6.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에서 경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
- 7.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
- 8.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감사대상 기관이 책임 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
- 제17조(경고 등 처분의 처분권자)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(이하 "처분권자"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경고 등 처분의 대상자가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임용권한의 범위 밖에 있어 처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경고 등 처분의 방법)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(훈계)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. 〈개정 2014. 10. 8〉
- 제19조(기록관리)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 관용심사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
- 제3조(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정은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심의회를 개최하거나 경고 등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〈2014. 10. 8 훈령 제372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7. 10. 2 규칙 제8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 8의 회계과,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·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부시장"을 "제1부시장"으로 한다.

③ 부터 ② 까지 생략

부칙〈2019. 12. 31 훈령 제463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19. 12. 31〉

# 면책심의회 심사결과

심사 개요	일 시	장 소	
	안 건		
	양 정		
	(안)		
심사결과			

20 . . .

용 인 시 면 책 심 의 회	위 원	장	( 또는 인)
	부위원	원 장	(서명 또는 인)
	위	원	(서명 또는 인)
	위	원	(서명 또는 인)
	위	원	(서명 또는 인)
	간	사	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2호서식] 〈개정 2019. 12. 31〉

## 면책심사신청 안내

용인시 주관 ○○○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신청권자

- 가.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
- ※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 첨부
- 나.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
- 2. 신청기간 : 감사결과 처분 이전

#### 3. 적극행정 면책요건

- 가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- 나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
- 다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
#### ※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

-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한 경우
-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

#### ※ 면책요건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

-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등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: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. 다만,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로 면책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
-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·의견표명을 이행 :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.

#### 4.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

- 가.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
- 나.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- 다. 위법 · 부당한 민원 수용 등 업무처리를 한 경우
- 라.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 · 부당한 행위를 경우

[별지 제3호서식] 〈개정 2019. 12. 31〉

## 면책심사 신청서

감사지적 사항	
구체적 판단 기준	신 청내 용
1. 불합리한 규제개선, 업무	
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	
2.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	
3.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	
여부	
가.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	
나.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	
유무	
11 1	
4.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	
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	
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·	
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	
	소속기관(부서) 의견

#### ※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

「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 기관(부서)명 직명 성명 (서명 또는 인) 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 〈개정 2019. 12. 31〉

# 면책심사조서

	감사 기관명		감사 연월일	
	건 명			
	신 청 인			
	심사 대상자			
	징계양정(안)			
	감사지적 사항			
	불합리한 규제개선, 업무 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			
신	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			
청 내	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			
· 명	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·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			
	감시	부서 종합의견		

[별지 제5호서식] 〈개정 2019. 12. 31〉

#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

일련	접수	71.04	신청(	심사) 대성	}자	심 사	A1 (1747)	결 과 통보일	
번호	연월일	건명	소속기관	직위(급)	성명	연월일	심사결과		

[별지 제6호서식] 〈개정 2019. 12. 31〉

# 경 고(훈 계)장

소				속	
직	위	(	급	)	
성				명	
					위반 및 처분내용

년 월 일

처분권자 (직인)

[별지 제7호서식] 〈개정 2019. 12. 31〉

# 경고 등 처분대장

일련	처분	처 분 대 상 자										. 1		
	일자							성	명	처	문	사	Ĥ	비고